

규제영향분석서

변리사법 시행령

<목 차>

1. 변리사 실무수습

특허청

< 규제의 개요 >

1. 규제사무명	변리사 실무수습							
2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특허청	작성 자	이름	여덕호			
	담당부서 (과)	산업재산인력과		직급	4급			
	국장	김태만		연락처	042-481-5187			
	과장	이춘무		이메일	dhyeo@korea.kr			
3. 관계법령 · 고시 등	변리사법 시행령 제12조							
4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피규제집단 : 예비 변리사(연간 1,700여명) 이해관계자 : 출원인, 변리사, 변호사 등 관련 부처 : 법무부, 교육부							
5. 규제 존속기한	미설정 - 변리사실무수습은 출원인의 신뢰 확보 및 변리사 자격제도에 필수적인 제도로 존속이 필요하며, 변리사법에 근거 조항이 존재하여 시행령·시행규칙의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							
6. 구분 (신설 또는 강화)	강화							
7. 신설(강화) 규제의 요지	- ‘변리사법’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·공포('16.1.27.)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변리사 실무수습의 기간 및 내용 등을 시행령·시행규칙에 규정							
8.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실무수습 이수 (변리사시험합격자 및 변호사자격자)</td> <td style="font-size: 2em; vertical-align: middle;">▶</td> <td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실무수습 이수완료시, 변리사 자격부여(특허청)</td> </tr> </table>					실무수습 이수 (변리사시험합격자 및 변호사자격자)	▶	실무수습 이수완료시, 변리사 자격부여(특허청)
실무수습 이수 (변리사시험합격자 및 변호사자격자)	▶	실무수습 이수완료시, 변리사 자격부여(특허청)						

□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

- ‘변리사법’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·공포(’16.1.27.)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변리사 실무수습의 기간 및 내용 등을 시행령·시행규칙에 규정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실무수습)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.</p> <p>② 실무수습의 내용과 그 밖에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제12조(실무수습) ① 법 제3조에 따른 실무수습은 이론교육과 현장연수로 구분한다.</p> <p>② 이론교육은 400시간 이상으로 하고, 현장연수는 10월 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③ 이론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(이하 ‘이론교육 기관’이라 한다)에서 실시한다.</p> <p>1. 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조에 따른 국제지식재산연수원</p> <p>2. 법 제9조에 따른 변리사회 또는 변리사회가 지정한 기관</p> <p>④ 현장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(이하 ‘현장연수 기관’이라 한다)에서 실시한다.</p> <p>1. 특허법인, 특허법인(유한)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</p> <p>2.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</p> <p>3. 특허청장이 정하는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,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, 기관 또는 단체</p> <p>⑤ 실무수습 대상자가 사전에 이론교육 및 현장연수에 상당하는 실무수습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실무수습의 일부를 이미 완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</p> <p>⑥ 실무수습의 내용, 기관, 실무수습</p>

현 행	개 정 안
<신설>	의 일부 인정 등 그 밖에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1. 규제의 필요성

가. 현황 및 문제점

□ 변리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필요

- 변리사법 개정*으로 변호사들도 일정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,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

* 국회 본회의 통과('15.12.31), 공포('16.1.27), 시행('16.7.28)

- 개정 변리사법에서 변리사 실무수습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, 실무수습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해 대통령령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의 개정이 필요

나. 정부 개입의 필요성

□ 개정 변리사법(제3조)은 실무수습을 하위법령에 위임

- 변리사 실무수습이 기존에는 변리사의 등록 요건이었으나,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예비 변리사의 자격 요건으로 변경되고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
- 일반 출원인이 특허 등을 출원할 때 변리사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구축하고, 변리사 실무수습 대상자의 출신·경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무수습 제도 도입이 필요

□ 대통령령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의 제·개정은 정부의 고유 권한

- 변리사법 하위법령에 위임한 변리사 실무수습의 내용, 기간, 기관 등 세부사항을 변리사법 시행령·시행규칙에 규정하여 변리사 자격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

다.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

□ (정부) 합리적 실무수습 도입으로 변리사의 전문성 확보

- 변리사법 개정·공포·시행에 맞추어 법에서 위임된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하위법령을 마련

- 실무수습이 면제되었던 변호사 등도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여 변리사의 전문성 확보 및 변리사 자격제도의 안정적 운영 도모
- (변리사) 사전 경력을 고려한 실무수습으로 불필요한 수습 기간이 감소하고 변리사로서의 전문성 강화
 - 실무수습을 변리업 수행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내용으로 정하고 출신 및 경력별 맞춤형으로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·경력을 인정* 하여 불필요한 수습기간이 감소
 - * 변리사 사무소, 로스쿨·사법연수원 등에서 산업재산권 관련 과목을 이수하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, 실무수습의 일부를 인정
 - 변호사 등도 변리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 변리사로 활동 하므로 출원인에게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
- (출원인) 변리사 자격에 대한 신뢰 확보 및 변리 서비스의 다양화로 편익 증대
 -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변리사가 변리사 실무수습을 이수해야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므로 전문자격제도에 대한 일반 출원인의 신뢰성 확보 가능
 - 다양한 출신의 변리사로 인해 출원인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변리사에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다양화가 가능
 - 변리사가 부족한 지역에 변호사 등이 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 출원인의 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
 - * 지역별 개업 변리사 분포('15.12) : 서울 3,426명(82.6%), 경기 233명(5.6%), 대전 137명(3.3%), 기타 350명(8.5%)

2. 대안의 발굴·검토

가. 고려된 대안

< 현행유지안 : 현행과 같이 1년간 실무수습 이수 >

- 현행 변리사법 시행령은 1년의 실무수습 의무를 부과
 - 개정 변리사법(제3조)은 기존 변리사 시험 합격자 이외에 변호사·특허청 경력자를 포함한 모든 예비 변리사가 자격 취득을 위해 실무수습을 이수하도록 규정
 - 현재와 동일한 실무수습 적용은 다양화된 수습 대상자의 사전 경력, 실무 능력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불가

< 비규제대안 : 실무수습의 민간 자율 운영 또는 면제 >

-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변호사·특허청경력자를 포함한 모든 예비 변리사가 자격 취득 전 실무수습을 이수해야 하며,
 - 변리사 시험, 변호사 등 예비 변리사의 변리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최소한 내용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
- 변호사는 변리사법 개정 이전에 실무수습을 받지 않고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,
 - 개정 변리사법은 모든 예비 변리사에게 실무수습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종전과 같은 실무수습의 면제는 불가

< 규제대안 1 : 변리사 실무수습을 이론교육 및 현장연수로 구분 실시 >

- 변리사 자격획득을 위한 실무수습을 이론교육(400시간), 현장연수(10개월)로 구분하여 실무수습의 내용을 규정
 - 예비 변리사가 변리사 사무소, 로스쿨, 사법연수원 등에서 산업재산권 관련 사전 경력 및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실무수습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

나. 대안의 분석

<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>

- 변호사도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 실무수습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임
- 다만, 일반 출원인의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변리사 제도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실무수습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임

< 민간의 자율성·창의성 >

- 변리사 실무수습은 변리사법 개정에 따라 등록 요건에서 자격 요건으로 변경되었으며, 변리사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특허청이 변리사 실무수습의 내용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
- 다만, 변리사회, 변리사사무소 등 민간 기관의 자율성·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변리사 실무수습을 운영할 예정

< 해외사례 분석 >

- 해외 주요 국가는 변리사 관련 법률, 시장 상황, 자격제도에 대한 국가 정책 방향 등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
- 각 국가의 운영 방식은 다양하나 출원인이 양질의 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변리사 제도를 운영
- 일본의 변리사 자격제도 운영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*하며 실무수습 이수하여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
- * 출원 서류 작성 등 변리사의 사무능력 담보를 위해 변호사, 특허청 경력자 등도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변리사법 개정('07)
- 실무수습은 144단위(1단위당 30분)로 총 72시간의 교육을 이수
- 특허청, 변리사 사무소 등에서 일정 기간 이상 산업재산권 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한 사람, 변호사 등은 실무수습의 일부를 면제

- 변호사는 변리사법 및 변리사의 직업윤리(8시간) 수강으로 실무수습을 완료

< 일본의 변리사 실무수습 내용 >

구 분	온라인	이론수습
변리사법 및 변리사의 직업윤리	16단위	-
특허 및 실용신안 이론/실무	27단위	30단위
의장 이론/실무	12단위	12단위
상표 이론/실무	18단위	12단위
조약, 기타 변리사에 대한 이론/실무	17단위	

- 독일·프랑스·영국 등 유럽계 국가는 변리사 시험 응시 및 자격 취득 요건으로 2~3년의 지식재산권 분야 연수 또는 실무경력을 요구
 - 변리사 시험 응시 자격으로 실무 능력이 일정 이상 검증된 것으로 보아 시험 합격자에 대한 별도의 실무수습 과정은 없음
 - 미국은 특허청을 대상으로 출원·심판 대리 업무를 하는 특허대리인(patent agent)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변호사도 특허대리인 시험에 합격해야만 특허출원 대리 업무 가능
 - 변리사, 특허변호사는 시험 합격 후 별도의 실무수습 과정이 없음
- ※ 미국 Patent Agent는 특허청에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객관식 시험만을 거쳐 선발하는 자격사로, 심결취소소송 대리권한이 없는 등 한국, 일본의 변리사와 지위 및 권한이 다름

< 타법사례 분석 >

- 타 자격사는 실무수습을 등록 요건으로 규정(변호사 제외)하고 있으며, 집합교육과 사무소 등의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

구 분	변 호 사	세 무 사	관 세 사	법 무 사	공 인 회 계 사	공 인 노 무 사
합격자수	1500명선 (사시제외)	630명	90명	120명	850명	250명
실무수습기간	6월	집합1월 실무 5월	집합1월 실무 5월	집합3주 실무 9주	1년(등록) 2년(외부감사) (인터넷교육 100시간)	집합1월 실무 5월
실무수습비용	-	20만원	45만원	50만원	52만원(회차당)	72만원

- 세무사법은 변호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(제3조)하고 있으나 세무사 관련 별도의 실무수습이 없음
- 자격사의 실무수습은 해당 자격사 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며, 공인노무사는 인력관리공단 산하 대학(2곳)에 추가로 위탁·운영
- 타 자격사는 공무원 외에 사전 교육 및 경력에 따른 실무수습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,
 - 공무원 외에 관련 업계 또는 업무 종사 경력을 시험의 일부면제 요건으로 규정하여, 실무 경험이 있는 자의 자격사 취득을 유도
 - * 공인회계사 : 대학, 은행, 기업 등에서 회계 업무 경력자는 1차 시험 면제
 - 공인노무사 : 노조 전임자, 노무관리 전담자 등은 1차 시험 일부 면제

< 위임근거 검토 >

- 변리사법 일부개정법 제3조('16.1.27.자 공포)에 실무수습 규정

제3조(자격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.

1.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
2.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

※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으나, 산업위 위원들은 로스쿨 졸업생에 대한 최소한의 실무적인

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시행령에 위임토록 의결('15.11.19)

< 이해관계자 협의 >

- 변리사 실무수습과 관련하여 주요 이해관계인 및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간담회, 토론회 등을 개최

<변리사 실무수습 관련 주요 이해관계인 의견>

변리사회 : 변호사는 1년2개월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를 포함하여 2년의 실무수습이 필요

변호사협회 : 변호사의 실무수습은 2개월의 이론교육으로 충분하며, 변호사의 실무수습은 변호사협회가 주관

로스쿨 : 변호사에 대한 실무수습은 변호사가 이미 취업한 상태에서 실무수습을 받는 것과 변리사법 개정 취지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

-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관련 간담회 개최('16.3.10)
 - (참석) 변리사회 3명, 변호사협회 3명
 - (변리사회) 변리사 실무수습은 변리사회가 주관
 - (변호사협회) 변호사에 대한 실무수습은 변호사협회에서 수행
-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관련 1차 토론회 ('16.3.17.)
 - (참석) 변리사, 변호사, 변리사 수험생, 로스쿨 재학생 등 100여 명
 - (변호사협회)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의 실무수습을 진행하고, 집합교육 형태로 2개월의 실무수습 제안

※ 토론회 발표 대상은 변리사회, 변호사협회였으나, 변리사회는 발표 거부
-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관련 2차 토론회 ('16.4.1.)
 - (참석) 변리사, 변호사, 로스쿨 교수·학생, 기업관계자 등 90여 명
 - (변리사회) 변호사는 총 24개월의 실무수습을 받고, 대한변리

사회가 실무수습을 주관

- (변호사협회) 특허 명세서 작성 등의 교육은 필요하나 법률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실무수습은 2개월의 집체교육으로 충분
- (로스쿨) 로스쿨 취지·교육목적·교육내용과 실무수습의 연계 모색이 필요하며, 중복되는 교육은 집체교육에서 제외
- (기업) 실무수습을 기존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
- (국책연구소) 수요자인 기업·연구원 등의 의견 반영이 필요
- 변리사법 개정 전 특허청은 「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」 운영을 통해 변리사 자격 등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(총 16회 회의, '12.11~'13.4)
 - (구성) 학계(4명), 산업계(4명), 변리사(4명), 변호사(4명) 등 12명
 - (경과) 공청회('13.5.31), 관계부처·기관 의견문의('13.7), 입법예고('13.9~10) 등 총 37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합의안을 마련

<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>

-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리사 실무수습 대상이 기존의 변리사시험 합격자에서 변호사 등으로 확대
 - 기존의 실무수습 관련 규정으로는 다양화된 예비 변리사에게 출신 및 경력에 따른 합리적인 실무수습을 시행할 수 없음

< 결론 >

- 개정된 변리사 실무수습은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, 일반 출원인의 변리사에 대한 신뢰 확보, 변리 서비스의 다양화로 편익 증대 등 실무수습의 추진 방향에 적합
- 변리사법 일부개정법('16.1.27 공포) 제3조에서 변리사의 실무수습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 근거가 명확함

- 변리사 실무수습에 대해 변리사, 변호사, 로스쿨,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합리적인 실무수습 안을 마련
 - 실무수습을 변리업 수행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내용으로 정하고, 출신 및 경력별 맞춤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
 - 변호사도 산업재산권 법률 이론, 실무, 자연과학개론 등을 교육 받도록 하여 모든 변리사가 필요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토록 규정
 - 실무수습 내용과 관련된 사전 경력 중 일부를 인정하여 중복을 방지
- 다양한 실무수습 담당 기관을 인정하여 민간의 노하우 및 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안정적인 실무수습 운영이 가능
 - * 이론교육기관 :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, 변리사회 및 변리사회가 지정하는 기관
 - 현장연수기관 : 변리사사무소, 법률사무소, 산업재산권 관련 국가, 공공 기관 등

3. 대안별 비용·편익 분석

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가격기준연도	현재가치 기준연도	분석대상기간 (년)	할인율(%)	단위
2016	2016	10	5.5	백만원, 현재가치

현행유지안 : 현행과 같이 1년간 실무수습 이수
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		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		
기업순비용			연간균등순비용	

규제대안 1 : 변리사 실무수습을 이론교육 및 현장연수로 구분 실시

영향집단		비용		편익		순비용	
		총 (현행 포함)	증감 (대안1-현행)	총	증감	총	증감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					
	간접						
피규제 일반국민		62,007.5	62,007.5	113,242.8	113,242.8	-51,235.3	-51,235.3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	147,950	147,950	-147,950	-147,950
정부		3,411.2	3,411.2	3,660.04	3,660.04	-248.84	-248.84
총 합계		65,418.7	65,418.7	264,852.8 4	264,852.8 4	-199,434. 14	-199,434. 14
기업순비용				연간균등순비용			

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<현행유지안 : 현행과 같이 1년간 실무수습 이수>

① 피규제 일반국민 :

정성적 분석	
--------	--

<규제대안 1 : 변리사 실무수습을 이론교육 및 현장연수로 구분 실시>

① 피규제 일반국민 :

비용 : 62,007.5백만

(정량)제목	변리사 실무수습 이수 비용
금액	14,960,000,000
(정량)제목	교육참여 기회비용
금액	47,047,500,000

(정성)제목	변리사의 전문성 강화
분석	사전 경력을 고려한 실무수습으로 불필요한 수습기간이 감소하고 변리사로서의 전문성 강화

편익 : 113,242.8백만

(정량)제목	변리사 자격 취득으로 인한 급여 인상
금액	113,242,800,000

(정성)제목	
분석	

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:

편익 : 147,950백만

(정량)제목	지역 소재 기업의 변리사 접근성 강화
금액	147,950,000,000

(정성)제목	전문화된 변리서비스의 혜택
--------	----------------

분석	특허분쟁의 사전 대비 및 다양한 변리서비스의 활성화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③ 정부 :

비용 : 3,411.2백만

(정량)제목	행정 인력
금액	1,681,200,000

(정량)제목	실무수습 운영비
금액	1,730,000,000

(정성)제목	
분석	

편익 : 3,660.04백만

(정량)제목	외부민간교육기관 화를을 통한 예산 절감
금액	600,000,000

(정량)제목	특허 등 심판무효인용율 감소로 인한 심판대응 행정비용 절감
금액	3,060,045,000

정성적 분석	
--------	--

4. 대안분석의 종합결론

가.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

< 행정적·재정적 집행 가능성 >

- 다수의 행정인력이 필요하지 않고, 기존 실무수습을 확대 운영하고 실무수습 비용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려할 때,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집행 가능함

< 기술적 집행 가능성 >

- 특허청은 변리사자격제도를 운영하는 주무부처로서 과거 변리사 실무수습을 운영(~'11)해왔으므로 기술적 집행 가능함

<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>

해당사항 없음

나.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

<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>

해당사항 없음

< 경쟁영향평가 >

- 그간 변호사는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, 변리사법 개정으로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

- 변호사라면 누구나 실무수습을 신청·이수하여 변리사 자격의 취득이 가능하고
- 사전 교육 및 경력에 따라 실무수습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어 변리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변리사법 개정 취지에 부합

< 기술규제 영향평가 >

해당사항 없음

다. 대안 선택 및 근거

변리사 실무수습은 비용 대비 편익이 크므로 선택 가능한 대안임

라.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

(정부) 변리사 전문성 확보 및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

- 변리사 실무수습을 통해 변리사의 전문성 확보 및 변리사 자격 제도의 안정적 운영도모
- 로스쿨이 지식재산분야 이론 및 실무 교육 확대가 예상되어 다양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부합

(변리사) 실질적인 교육·경력을 인정하여 불필요한 수습기간 감소 및 변리사로서의 전문성 강화

- 실무수습을 변리업 수행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내용으로 정하고 출신 및 경력별 맞춤형으로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·경력을 인정하여 불필요한 수습기간 감소

(출원인) 변리사 자격에 대한 신뢰 확보

-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변리사가 변리사로서의 실무수습을 이수해야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므로 전문자격제도에 대한 일반 출원인의 신뢰성 확보 가능

마.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

해당 사항 없음